탄 원 서

12·3 비상계엄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수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귀중 **상고심 사건번호** _____

대상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신중하고 균형 있는 최종 판단을 부탁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비상계엄이 우리 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에 미친 충격, 국무총리가 져야 할 헌법상 책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안이 엄중할수록 비상계엄을 결정·지휘한 사람과 국무위원으로 관여한 사람의 행위, 고의 및 기여 정도를 각각 증거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가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지위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에 따른 판단

항소심은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알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주요 기관 봉쇄 및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한 지시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판단의 중대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종심에서는 어떤 행위가 내란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인식과 가담의 고의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되는지를 법률상 구성요건에 맞추어 정밀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무총리라는 지위에서 파생되는 행정적 책임과 내란 범죄의 형사책임을 구별하고, 선포 전의 관여·선포 직후의 행동·해제 이후의 행위를 시간 순서와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개별 평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국무회의 소집·의사정족수: 적극적 가담과 부작위 책임의 구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참석 국무위원을 모으는 과정은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나 실질적 심의를 이끌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별도의 부작위범 책임에 관해서는 1심과 달리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권한 구조, 구체적 작위의무, 결과 방지 가능성과 형사책임의 성립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권한이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졌는지, 국무회의의 소집 및 진행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적극적으로 한 행동과 하지 못한 행동의 법적 성격이 중복 평가되지 않았는지를 특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무위원 서명 요청: 인정된 사실과 인정되지 않은 사실의 경계

항소심은 국무위원의 '부서(副署)' 외관을 만들려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국무회의 참석 취지의 서명을 받으려 시도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부서와 참석 확인 서명은 법적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실제 문서의 종류, 서명 요청의 경위와 시점, 참석자들이 이해한 취지 등을 구별하여, 입증된 행위의 범위를 넘는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관 봉쇄·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논의의 실제 관여 범위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항소심이 관련 지시의 이행방안 논의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해당 계획을 직접 발안하거나 명령·집행을 지휘하였는지, 어떤 내용을 누구와 논의하였는지, 그 대화가 실제 집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행위자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논의와 관련한 별도 부작위 책임은 항소심에서 기소 범위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파기된 점도 함께 살펴 주십시오.

5. 계엄 해제 지연 등 인정되지 않은 공소사실의 엄격한 분리

항소심은 계엄 선포 뒤 국회 통고 여부 확인 등 일부 행위,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 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하였다는 부분, 대통령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 등을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전체 사건이 무죄라는 의미가 아니지만, 인정되지 않은 행위까지 하나의 포괄적인 내란 가담 행위처럼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범죄 성립 판단과 형량을 살필 때 그 범위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6.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및 헌법재판소 증언

항소심은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작성, 문서 폐기에 관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계엄 관련 문건을 받거나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한 위증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문서의 진정성과 헌법재판 절차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 판단된 부분을 축소하려는 뜻은 없습니다. 다만 문서 작성·서명·보관·폐기라는 행위별 관여 범위와 위증의 고의를 각각 구별하여, 이미 무죄로 판단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협의와 문건 전달 장면 목격에 관한 위증 부분이 유죄 범위에 혼입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7. 형량의 비례성: 주도성과 가담 정도, 공직 경력의 종합적 참작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장기간의 공직 수행과 내란을 주도하는 방식의 적극적 가담은 아니었다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살폈습니다. 한편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임을 저버린 점과 사후 범행에 관한 엄중한 질책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까지 외면하지 않는 전제에서, 피고인 개인의 역할과 고의의 정도, 인정된 범죄의 구체적 범위, 오랜 공직의 공과(功過)를 종합하여 형벌의 비례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맺음말 | 법리에 충실한 판단과 관대한 처분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특별대우도 구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구성요건이 증명된 만큼만 책임을 묻고, 증명이 부족한 부분은 엄격하게 분리하며, 인정되는 책임에 대해서도 각자의 실제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범위와 관련 법리를 신중히 정립해 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 전 총리의 개별 사정에 대한 최대한의 참작과 관대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